

**공 고****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4-608호****- 명륜4가주택재개발정비구역 -  
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·공고**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111호(2006. 3.30)로 명륜4가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되고 2004. 9.13.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되어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중 2014. 6. 3.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4-56호(2014. 6.27)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는바,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·공고합니다.

2014년 7월 11일

**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**

가. 공람기간 : 공람공고일로부터 30일간

나. 공람장소 : 종로구청 주택과(☎02-2148-2623)

다. 공람내용 : 명륜4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·공고

라. 구역현황

1) 사업명칭 : 명륜4가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

2) 위 치 :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127번지 일원

3) 구역면적 : 10,058.44㎡

마. 정비구역 지정일 : 2006. 3.30(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11호)

바. 관련법령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(정비구역등 해제)

사. 명륜4가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종로구 주택과에 비치하고 있으니, 본 공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위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공 램 의 견 서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|---------|
| 사 업 명        | 명륜4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( 종로구 명륜동 127번지 일원) |  |            |         |
| 공람기간         | 공람공고일로부터 30일간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|         |
| 대 상<br>물 건 지 | 건 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| 토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|         |
| 의 견<br>제 출 인 |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주민등록<br>번호 | — ***** |
|              |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전화번호       |         |

내 용